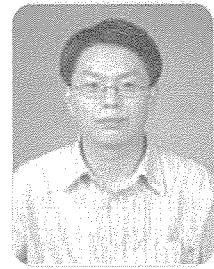


〈특 집 : 도서관과 한미 FTA〉

한미 FTA의 내용과 도서관 분야의 대응방향



김 정 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연구원, jgkim@kiep.go.kr

1. 서론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가 2차 협상까지 진행되었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거대 선진경제권과 FTA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의 경제개방이 주로 공산품의 관세 인하를 위주로 진행되었다면, 최근의 경제개방 추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과 관련 제도, 나아가서 전반적인 국내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범위가 넓고 심도 역시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선진제도의 도입 및 정착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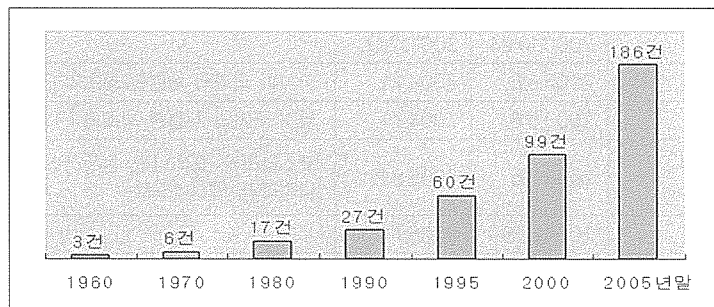
도서관 분야 역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의 영향권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미국은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분야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바, 이는 도서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고에서는 1) 한미 FTA 협상 출범의 배경과 의의 및 내용과, 2) 지적권 분야에서의 미국의 관심사항, 3) USTR(미국무역대표부)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서관 분야에 대한 미국의 예상 요구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한미 FTA협상의 출범 배경과 내용

1990년대 이후 FTA는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FTA는 둘 이상의 국가간에 자유로운 무역을 수행하기 위해 체결되는 경제통합의 일종이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와 DDA(Doha Development Agenda)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은 비교적 많은 시간을 소모하며 경제개방의 수준 역시 모든 국가들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의 대안으로서 관심 있는 국가간의 협상에 의해 신속히 자유무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FTA가 각국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FTA는 전통적으로 상품 관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지만, 근래에는 관세 이외에 서비스시장 개방, 지식재산권 규정 강화, 각종 투자 장벽 감축 등 포괄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1990년대 초 27건에 불과했던 FTA는 2005년 말 현재 186건으로 급증하여(120건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체결되었다.) 이제 FTA는 가히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유럽은 이미 경제통합을 수십 년간 추진해 왔으며(European Union, 유럽연합), 미국과 일본 등 한 때 지역단위의 경제통합에 소극적이었던 선진국들도 적극적으로 FTA 체결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개도국들도 앞 다투어 FTA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DDA협상이 난국에 봉착함에 따라 각국은 FTA 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세계 FTA 체결 현황(발효 기준)



자료 : WTO

우리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FTA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대륙별 ‘교두보’ 국가들(칠레 : 중남미, 싱가포르 : ASEAN,

EFTA: EU)과 3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여기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본격 추진한다는 전반적인 FTA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일환으로서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협상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선제적인 요청 외에 미국이 최근 FTA 체결에 적극적인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1985년 이스라엘과의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FTA 체결에 한동안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WTO의 다자간 협상이 부진하자 미국은 매우 적극적인 FTA 체결전략으로 선회하여 싱가포르, 칠레, 호주, 바레인 등과 FTA를 체결하고, 현재 파나마, 안데스지역 국가(Andean FTA), 남아프리카지역 국가(SACU FTA)와의 FTA를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은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로 불리는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지역무역협정의 적극적인 체결을 통하여 다자협상에 참여하는 당사국을 압박하고, 또 역으로 지역무역협정이 부진할 경우 다자협상을 강력히 추진하여 해당 교역대상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와의 FTA는 지금까지 추진한 FTA 가운데 경제적 의미가 가장 큰 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표 1〉 미국의 FTA 체결 현황

대상국	체결일	발효일	비고
이스라엘	1985.4.22.	1985.8.19.	
캐나다(CUSFTA)	1988.1.2.	1989.1.1.	NAFTA로 확대
캐나다, 멕시코(NAFTA)	1992.12.17.	1994.1.1.	
요르단	2000.10.24.	2001.12.17.	
싱가포르	2003.5.6.	2004.1.1.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
칠레	2003.6.6.	2004.1.1.	남미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
중미 및 도미니카 (CAFTA-DR)	2004.8.5.	2005.8.2.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호주	2004.5.18.	2005.1.1.	
모로코	2004.6.14.	-	
바레인	2004.9.14.	-	

자료 : 박민권(2006)

우리나라는 1960년대 개발단계부터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무역량의 비율(무역의존도)은 약

1) 김정곤(2006).

70%(서비스까지 포함할 경우 86.3%, 이상 2004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단일 국가로서 전세계 GDP의 약 28.6%(2004년 현재)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며, 중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FTA는 거대한 미국시장에 다른 국가들보다 나은 조건에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경쟁국에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는 이들 경쟁국에 앞서 세계 최대시장 선점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개선을 위해서 한미 FTA는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개선이 중요한 과제이다. 금융, 의료, 법률, 통신 등 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자체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즉 통신,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이를 중간투입물로 이용하는 제조업의 효율성 증가로도 이어져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할 경우 국내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서비스 업체들이 국내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이를 통한 기술이전 효과로 국내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 서비스 업체들은 외국 업체들과의 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²⁾

이 밖에도 한미 FTA를 통해 금융, 노동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투명하고 선진화된 제도와 관행(글로벌 스탠더드)을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미 FTA에 따른 양국간 동맹의 강화를 통한 안보리스크의 완화는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무역은 기본적으로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가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을 통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은 구조조정을 수반하게 되며 불가피하게 피해분야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자유무역정책으로 인한 일시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는 국내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의 일부 피해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국내적인 패자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및 전반적인 복지정책의 정비 및 강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³⁾

2) 서비스 시장 개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유통시장 개방을 들 수 있다. 유통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통업계는 외국 업체와의 경쟁을 이겨냈다. 여기에는 국내업계의 노력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이지만, 서비스업의 특성상 해당 국가의 사회, 문화적 특성까지 외국 업체가 고려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도 작용하였다.

3) 이상 한·미 FTA의 기대효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을 참고하였음.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최근의 FTA는 단순한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제도 개선을 수반하는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과거 통상 또는 무역에만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던 FTA 등 경제통합은 국내 법, 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업체, 소비자,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며, 따라서 대내적인 제도 개선 등 각종 대책 마련을 위한 대내협상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이외에 지식재산권, 투자규정,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규정, 정부조달, 경쟁정책, 노동기준, 환경기준, 서비스 자유화 및 서비스 인력이동 자유화, 통신 및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를 FTA 협상 의제로 포괄하고 있다. 또한 농업과 섬유와 같이 양국에게 민감한 산업분야는 별도의 협상 분과를 설치하기로 합의 하였다. 한미 FTA 협상은 아래와 같은 협상분야를 포괄한다.

〈표 2〉 한미 FTA협상의 협상분야

분야	내용
상품무역	상품(농산물 제외) 관세 인하/철폐, 자동차, 의약품 문제 등
무역구제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농업	농산물 관세인하/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섬유	섬유/의류 분야, 섬유 원산지 규정 등
원산지/통관	품목별 원산지기준 설정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
위생 및 검역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협정 등
투자	투자 자유화 및 보호
서비스	서비스(금융 제외) 자유화, 서비스 양허, 인력이동 자유화 등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문제
통신/전자상거래	통신, 전자 상거래 분야
경쟁	경쟁조치, 경쟁당국간 협력방안 등
정부조달	정부조달 자유화 방안, 양허하한선, 양허기관 확대 문제 등
지식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
노동	노동 관련 문제
환경	환경 관련 문제
분쟁해결/ 투명성/충치	- 협정의 해석 등 분쟁해결절차 -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한미 FTA 바로 알기』.

2차까지 진행된 한미 FTA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는 1)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농업개방 문제, 2) 금융 등 일부 서비스분야의 개방, 3) 우리나라의 의약품관련 약가산정 및 지식재산권 문제, 4)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 과세기준 개정 문제, 5) 미국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완화 여부, 6) 미국의 섬유 원산지 규정 폐지 여부, 7) 미국의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 등이다. 1~4의 쟁점은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는 사안이며, 5~7은 우리나라가 공세를 취하고 있는 쟁점이다.

3.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요구 사항

본 절에서는 도서관 분야와 관련이 큰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미 FTA의 예상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2차까지 진행된 한미 FTA 협상은 일부 분야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협상이 지체되고 있어 대표적인 쟁점 이외의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이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거하여 매년 미 의회에 제출하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약칭 NTE 보고서)⁴⁾는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장벽들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FTA 협상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2006년 동 보고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우리나라에 대한 요구사항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이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규범 마련 및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TRIPS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WIPO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보완하여 TRIPS는 지식재산권의 실질적인 국제 규범으로 평가된다.⁵⁾ 미국이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에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양자간 또는 지역간 논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스페셜 301조 법에 의거하여 매년 다른 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현황을 검토하여 국

4) USTR은 각 국가에 있는 미국의 상공회의소와 대사관, 그리고 산업협회나 기업들이 무역장벽이라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취합하여 사안의 중요성, 다자 및 양자 협정의 위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NTE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5) 박노형(2006).

가별로 등급을 매기는데, 우리나라는 2005년 4월 저작권 보호 등급이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감시대상국(WL)으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가 발전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⁶⁾ 2006년 NTE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이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1) 사운드 녹음의 인터넷 전송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연주자,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저작권법에 추가한 점, 2) 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상물 불법복제물에 대한 규제력 부여⁷⁾, 3) 정보통신부 내 상설조사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기관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주요 실적으로 꼽고 있다.

다음으로 동 보고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⁸⁾ 저작권과 관련하여 미국은 첫째, 저작권법에 TPM(기술적 보호 조치,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관련 규정 추가, 둘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책임과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규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규정을 명확히 조화시킬 것, 셋째, 디지털환경의 발달에 따라 개인 복제(private copy)에 대한 예외 조항(저작권법 27조 및 71조) 개정의 필요성, 넷째,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 보호기간(저자의 생존기간+50년)을 저자의 생존기간+70년 또는 최초 발행 시점+95년으로 연장 등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인터넷 환경이 급진전함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 보고서는 일시적 복제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 TPM의 보호제도 개선,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저자의 생존기간+70년 또는 최초 발행 시점+95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2006년 보고서에 새롭게 등장한 이슈로서, 미국은 우리나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중재가 당사자 전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서적 및 비디오, DVD 불법 복제는 미국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미국은 교과서 불법 복제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출판 및 인쇄진흥법」은 서적 불법복제 방지 법규 시행 시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교과서 불법 복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 출판사와 저작권자의 참여도 허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우리나라의 길거리에서 흔히 판매되고 있는 불법복제 DVD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보다 엄격히 단속해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6) 우리나라는 2004년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상향조정된 바 있었다.

7) 2003년 12월 우리나라 국회는 저작권을 위배한 자가 등급 요청을 해올 경우 이를 식별하고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8) 특히 관련 내용은 본고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본문에서는 생략하였으나, 의약품 관련 미국의 주장은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문에서 언급해두었다. 이하 NTE 보고서의 저작권 관련 이슈는 이경희 씨(2006)를 참고하였음.

그 밖에 미국은 최근 의약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기업의 신약을 약간만 변경한 지네릭(generic) 의약품 생산을 지식재산권 침해로 간주하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05년 보고서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관련법 미비를 강하게 지적하였으며, 2006년 보고서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용물을 미세하게 변경한 약품 (slightly altered version)과 관련하여 일부 데이터 보호 규정을 제정(2005년) 한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의약품 분야의 지식재산권 문제는 국내 업계에 대한 파장이 커서 한미 FTA의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도서관 분야와 관련하여 미국은 도서 자료의 디지털 복제 시 저작권자에 대한 30일 이상의 통보기간을 둘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바, 이는 한미 FTA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로 예상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자.

〈표 3〉 지식재산권 관련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요구사항

분야	내용	해당분야
저작권	- TPM 관련 규정 강화	서적, 음반, 영상물, 인터넷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램
	- 인터넷서비스공급자의 책임 규정 개선	
	- 개인 용도의 복제에 대한 규정 개선	
	- 저작권 기간 연장	
	- 도서관용으로 복제시 30일전에 저작권자에게 통보 의무화	
	- 데이터베이스 보호와 관련된 일부 규정 폐지	
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보호	- 일시적 복제물 저작권 강화	컴퓨터 프로그램
	- TPM 보호제도 개정	
	- 저작권 기간 연장	
	- 프로그램심의위원회 중재 절차 개정	
불법복제	- 교과서 불법복제 방지제도 개선	서적(특히 교과서) 및 DVD, 비디오
	- 불법 DVD 판매 규제 강화	
특 허	- 특허법 위반 제품의 유통 규제 강화	의약품, 농화학제품, 동물건강제품, 화학제품, 애원동물식품, 초콜릿
	- 특허법 침해 소송 중 해당 제품의 유통 제한	
	- 외국 트레이드마크 무단 등록 금지 규정 및 소송절차 개선	
	- 사업기밀 보호 제도 강화	
데이터보호	- 의약품 개발정보에 대한 지재권 강화	의약품

자료 : 이경희·김정곤(2006).

4, 도서관 분야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요구사항과 대응 방향

2006년 NTE 보고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조항의 추가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 주장은 이미 매년 동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이다. 미국 측 주장의 요지는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허락 받지 않고 디지털화(unaudorized digitization)할 경우 적어도 30일 이상의 통지(notice) 기간을 저작권자(right holders)에게 부여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 보고서는 아울러 우리나라 저작권법 상의 도서관 면책(library exception)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미국, EU 등의 국가는 도서관 면책조항을 도서관에만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영화, 화보, 음악 기록물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⁹⁾ 2006년 NTE 보고서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With regard to library exceptions under Korea’s Copyright Act, the U.S. Government believes that a notice period of at least 30 days should be given to rights holders prior to the unaudorized digitization of their works to minimize any negative effects. Under the current law, library exceptions still apply only to literary works and not to broadcasts, performances and sound recordings.”¹⁰⁾

본 내용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통지(notice)’의 실행방법과 의미이다. 동 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와 같은 통지 의무를 실제로 이행해야 할 경우 당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의 소재를 찾는 문제 그리고 저작권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의 대응방법, 공동 저자일 경우의 통지 방법, 미국 측 저자일 경우의 저작권자 소재 찾기 및 통지 방법 등이 그것이다. 도서관 면책조항의 원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최소한의 자원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저작권자에게 사전에 통지를 한다는 것이 단순한 통지인지, 아니면 저작권자가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지도 동 보고서만으로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양한 가능성에

9) 미국의 저작권법 108(i)는 도서관의 복제 및 배포 권한이 음악작품(musical work), 화보(pictorial), 그래픽 또는 조각작품(graphic or sculptural work), 영화(motion picture), 또는 기타 시청각작품(audiovidual work)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10) USTR. 200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2006”. p. 405.

대비하고 미국 측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도서관 자료를 디지털화할 경우 그 대상, 조건, 배포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저작권법을 상세히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저작권물의 디지털화에 대하여 별도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The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of 1998)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미국 저작권법 상의 도서관 면책 조항과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향후 미국과의 FTA 체결을 대비하여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의를 요하는 문제는 2006년 NTE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도서관 면책 조항의 적용범위 문제이다.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은 현행법에서 과거 저작권법에서 사용했던 '자료'라는 단어를 '도서'로 대체하였다. '자료'라는 표현이 도서자료, 비도서 자료를 모두 지칭하는 것(디지털 자료를 포함하여)이라고 한다면, '도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도서관에서의 복제를 도서류로 한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¹¹⁾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¹²⁾ 우리나라 저작권법과는 달리 미국의 저작권법은 도서관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¹³⁾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도서관 면책 대상 자료에 대한 국내적인 논의를 통한 보다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11) 정경희(2002). 우리나라 저작권법 28조①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①도서관및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개정 1991.3.8, 1994.3.24, 2000.1.12, 2003.5.27>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2) 도서관및도서관진흥법 2조 3항에 의하면 "도서관자료"는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는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형태물·테이프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봉사 및 문고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저작권법 28조의 '도서등'이 이것을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13) 단, 미국의 저작권법에 의하면 도서관이 자체 보존을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 도서관 면책에서 제외된 매체도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미국 저작권법 108(i)).

그 밖에 한미 FTA 체결 시 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사용 및 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최근 FTA 체결 시 복제권, 배포권, 공중전달권 및 추구권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복제권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과 형태이든, 그리고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모든 복제에 대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명기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히 일시적 복제를 복제권의 적용 대상으로서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미 FTA 협상에서도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⁴⁾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의 경우 일시적 복제에 대하여 예외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는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직접 우회하는 행위와 접근 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및 이용 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장치나 서비스 등을 제조·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은 미국-호주 FTA 체결 시 그대로 반영되었다¹⁵⁾. 단,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와 관련하여 도서관의 경우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바, FTA 체결 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의 법제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NTE 보고서와 최근 미국이 체결한 FTA 협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기능 강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 시 도서관의 저작권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 즉, 법적 정비가 이루어지더라도 이것의 실행 과정에서 법집행자와 도서관 실무자들 사이에 충분한 사전 의사소통이 없을 경우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정부와 실무자 간의 활발한 의견교환 및 정보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최근의 FTA 협상은 단순히 관세 등의 무역장벽 완화가 아니라 국내제도의 개혁을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종 제도적 표준이 미국에서 비롯되는 만큼 미국과의 FTA는 미국과 우리의 각종 법규 및 제도의 조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직접적인 요구사항과 더불어 기타 예상할 수 있는 법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권 분야는 상

14) 박민권(2006). 미국-호주 FTA 협정 제17.4.1조.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following have th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all reproductions, in any manner or form, permanent or temporary(including temporary storage in material form) [하략]."

15) 박민권. 앞의 책.

기한 바와 같이 미국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로서, 미국법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 기간의 연장, 디지털자료에 대한 저작권 확대 및 규정 강화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차까지 진행된 한미 FTA 협상은 일부 논란 사항으로 인해 진전이 지체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USTR이 발간한 NTE 보고서는 미국의 관심사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동 보고서에서 요구한 사항은 향후 협상에서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동 보고서에서는 도서관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최소 30일간의 통지기간을 줌으로써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특히 주목을 끈다. 아울러 도서관 면책에 해당되는 자료의 범위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 파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한미 FTA에 대비하여 도서관계가 우선적으로 대비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미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서관 면책조항의 디지털자료와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적 정보보다 오히려 더욱 중요할 수 있는 문제로서, 한미 FTA 체결 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작권 관리 및 감독에 대비하여 정부와 도서관계가 긴밀히 협력하고 의사교환을 활발히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정곤. 2006. "미국의 FTA 체결 제도와 절차". 『월간 세계경제』 2006년 4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한미 FTA 바로 알기』.
 박노형. 2004. "미국의 지재권 관련 FTA전략". 『FTA와 지재권 세미나』 발표자료. 2004. 11. 16.
 박민권. 2006. "미국의 FTA 체결 현황 분석". 『한미 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 발표자료. 2006. 5. 24.
 이경희·김정곤. 2006. "미국의 2006년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월간 세계경제』 2006년 5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경희. 2002.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와 디지털 저작권". 『디지털도서관』 2002년 여름호.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US Copyright Office. 1998.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 : US Copyright Office Summary".
 USTR. 200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2006".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Australia FTA Full Text.
 US Copyright Act.
 US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of 1998.
 WTO Webpage. <http://www.wto.org/>